

고산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열람 공고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고산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지장물을 열람하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2일

파 주 시



1. 사업의 개요

- 가. 사 업 명 : 고산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 나. 사업시행자 : 파주시장
- 다.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343-4번지 일원
- 라. 사 업 량 : 축제공(L=0.112km), 교량 1개소, 낙차공 1개소 등
- 마. 기 간 : 2025. 3. ~ 2027. 12.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기 간 : 2026. 7. 22. ~ 2026. 8. 5.(14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나. 장 소 : 파주시 하천관리과,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 다. 공람내용
 - 고산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설계현황
 - 설고산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계획평면도, 용지 및 지장물 조서 등(※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파주시청 홈페이지 (www.paju.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2026. 7. 22. ~ 2026. 8. 5.)
- 나. 제출방법 : 서식(주민의견 제출서)에 따라 공람장소로 서면제출

4. 토지출입 내용

- 가. 출입사유 :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조사 · 측량 · 감정평가 등
나. 출입기간 : 공고일로부터 5일 후 ~ 사업종료 시까지
다. 출입구역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341-22번지 ~ 341-13번지
라. 출 입 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
토지출입 증표 소지자

5.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가. 사업에 대한 열람 ·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감정평가 후 보상계약이 체결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액 개별 지급합니다.

(※보상시기와 보상예산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계약은 사업추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나.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시 ·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 ·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다. 토지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 현금 지급합니다.(단, 압류 및 근저당은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 체결 원칙)

6. 감정평가업자 추천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사본, 인감증명서 등)를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주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단, 제출양식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해야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며,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

7. 기타사항

- 가. 현재 편입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분할측량,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나. 본 공고에 대하여 편입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 및 거소불명, 송달불능 등으로 인하여 통지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다. 보상토지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파주시에서 대위 분할합니다.
- 라. 토지의 분할, 합병, 착오 등의 사유로 공고에서 누락된 필지에 대하여는 해당 공고로서 갈음하되 보상계획에 대한 개별통지는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 하천시설팀(☎031-940-29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의견제출서(서식), 감정평가법인 추천서(서식)은 (www.paju.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용지조서 1부.
2. 주민의견제출서(서식) 1부.
3. 감정평가법인 추천서(서식) 1부. 끝.